

올림픽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스포츠선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박 문 석**

I. 서론

2016년 8월 21일 브라질 리우하계올림픽 남자마라톤경기에서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Eliud Kipchoge)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정작 이 경기에서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두 팔을 머리위로 교차시켜 'X자'를 그리며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에티오피아의 페이사 릴레사(Feyisa Lilesa)선수였다. 릴레사는 경기 후 기자회견과 시상식에서도 'X자' 세리머니를 반복하였는데, 'X자' 세리머니하게 된 이유와 그 의미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2015년 11월 이후 약 9개월간 반정부시위를 펼치고 있는 오르모(Oromo)족에 대해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여 1,000여명이 희생되거나 또는 투옥되는 등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자신이 속한 오르모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올림픽 무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X자'세리머니를 했다. 이러한 세리머니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의미이며 평화적인 시위를 펼치는 반정부시위대를 나는 지지한다. 만일 올림픽이 끝나고 내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간다면, 정부는 나를 죽일지도 모르며, 죽이지 않는다면 감옥에 넣을 것이다.”¹⁾

이러한 리우올림픽에서의 릴레사의 'X자' 세리머니와 발언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에티오피아의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으며,²⁾ 미국에서는 그의 안전을 위한 성금모금과 함

* 투고일자 : 2017.6.13. 심사일자 : 2017.6.20. 게재확정일자 : 2017.6.23.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1) 다독다독, “페이사 릴레사의 'X'”,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2016. 9. 5), <https://brunch.co.kr/@kpf10/260>(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2) 에티오피아는 Oromo(34.3%), Amhara(27.0%), Somali(6.2%), Tigray(6.1%) 등 80여 종족으로

게 법률자문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후 에티오피아정부는 릴레사의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릴레사와 관련된 다른 소식이 외신을 통해 국내로 전해졌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릴레사의 은메달을 박탈할지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는 IOC는 결승선과 시상식에서 'X자' 세리머니를 한 릴레사의 행위가 올림픽에서 정치·종교·상업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만일 IOC가 릴레사의 'X자' 세리머니를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인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올림픽 헌장 제59조 제2항 제2.1호에 따라 릴레사는 은메달을 IOC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당시 IOC는 릴레사에게 경고처분만을 하고 은메달 박탈하는 징계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릴레사의 'X자' 세리머니사건과 같이 올림픽 등 스포츠행사에서 선수들의 정치적 의사 및 감정의 표현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은 세계스포츠계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왔다.³⁾ IOC가 정치적 표현으로 판단해 금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68년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 남자육상 200m경기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흑인선수 토미 스미스(Tommie Smith)와 존 카를로스(John Carlos)가 시상식에서 행한 '흑인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사건(Black Power Salute)',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 사격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북한의 리호준 선수의 인터뷰를 통한 '정치적인 적대적 발언사건',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한·일전 경기 후 대한민국 박종우 선수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한 '독도는 우리 땅 세리머니사건',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올림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리우올림픽 남자마라톤 은메달리스트인 Lilesa가 속한 에티오피아 최대 다수 민족인 오로모족은 1974년 Mengistu 사회주의 정권이래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핵심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암하라족과 티그레이족에 의해 탄압적인 지배를 받아오고 있다. 2014년 4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확장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2015년 11월에 Oromia州 36개시와 17개 농촌지역을 초헌법적 권한으로 적절한 보상 없이 수용하여 광역아디스아바바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오로미아주에 거주하는 오로모족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며, 2016년 1월까지 약140여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6년 1월 13일 아디스아바바 확장계획을 철회했지만, 암하라족도 북부 도시 곤다르에서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면서 시위규모가 확대되었다. 이후 반정부 시위확산을 막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공권력투입을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등 강압적으로 반정부시위를 탄압하였으며, 급기야 2016년 10월초 오로미아주 Dukem시에서 개최된 Oromia Festival에서 반정부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는 경찰간의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총리령으로 2016년 10월 8일부터 6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2017년 3월 30일 에티오피아 인민회의는 국가비상사태를 4개월간 연장기로 결정하였다(최혜진·예상한,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와 최근 동향”, Africa Center Report 제14호,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Korea-Africa Center), 2016.10.18, 2-9면).

3) Frédérique Faut,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statements by athletes and its consistency with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International Sports Law Journal, Volume 14 Issue3 253, p.253. (November 2014)

픽기간 중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반정부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로 인한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선수단의 검은 완장착용 요청을 IOC가 불허한 ‘검은 완장(black armband)착용 불허사건’ 등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IOC는 올림픽참가 선수의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을 근거로 올림픽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부터 추모와 같이 정치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표현까지 모두다 정치적 표현에 해당된다며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결정하여 왔다. 또한 IOC는 해석과 결정과정에서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의 범위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⁴⁾ 물론 올림픽을 통한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이라는 올림픽이념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하는 올림픽운동의 발전과 보호육성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IOC가 올림픽에서 선수들과 경기단체들에 의한 정치적 표현과 선전을 묵인하게 된다면 올림픽이 자칫 국제사회 및 각국의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OC의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과 이로 인해 올림픽운동의 정신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세계에서 보편적이며 최고규범인 올림픽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림픽이념(Olympism)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⁵⁾ 이러한 올림픽이념의 목표는 스포츠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스포츠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올림픽헌장은 인권규범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올림픽헌장에서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과 IOC 및 NOC의 사명과 역할에 관한 규정에서 스포츠선수의 인권보장에 관한 규범적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올림픽헌장도 스포츠분야에 있어서 국제스포츠 인권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의 자유는 다른 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⁶⁾ 올림픽의 경기장

4) *Id.* at p.263.

5)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LYMPIC CHARTER, at 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 2, DidWeDo S.à.r.l., 2 August 2016, at p.11.

6)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의 체계상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으며(안경환,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11, 32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① 헌법재판소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사건, ② 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사건, ③ 헌법재판소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언급하고 있다.

및 장소에서 일부 참가선수들에 의한 국제사회와 자국의 인권보장을 위한 소극적인 정치적 표현 및 선전까지도 IOC가 단지 올림픽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은 올림픽헌장의 국제스포츠 인권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나아가 올림픽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마저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OC는 올림픽헌장 제52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의 범위와 내용과 그 판단기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올림픽이념에 부합하는 스포츠인권으로서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의 자유가 올림픽 경기장과 장소 등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스포츠선수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올림픽과 인권보장에 관해 올림픽헌장의 국제스포츠 인권규범의 지위 여부와 올림픽헌장의 인권규정들을 분석하고, IOC가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을 근거로 금지한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의 사례를 소개 및 평가하여, 올림픽에서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을 금지한 IOC의 해석과 결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올림픽과 인권보장

1. 올림픽 헌장의 목적과 법적성격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은 IOC가 채택한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 규칙, 부칙을 성문화한 것으로 올림픽운동의 조직, 활동, 운영의 기준이 되며, 올림픽경기의 개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문서이다.⁷⁾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이며, IOC초대위원장이었던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이 1898년경에 작성한 ‘국제올림픽위원회 규범(Annuaire Du Comit International Olympique)’⁸⁾은 1908년 1월 1일에 처음 출간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올림픽헌장의 출발이었다.⁹⁾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규범은 1938년부터 올림픽규칙(Olympic Rules)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가, 1971년에 올림픽규칙과 규정(Olympic Rules and Regulations)으로 명칭이 일시 변경되었으며, 1975년

7) IOC, *supra* note 6, at Introduction to the Olympic Charter, at p.9.

8) Pierre de Coubertin이 프랑스어로 작성한 국제올림픽위원회규범(Annuaire Du Comit International Olympique)은 IOC의 회원 지명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올림픽대회의 개최기간만을 규정하였다.

9) IOC, “Olympic Charters”, <https://www.olympic.org/olympic-studies-centre/collections/official-publications/olympic-charters>(검색일자 : 2017년 5월 30일).

부터 다시 올림픽규칙(Olympic Rules)로 명명되었다가, 드디어 1978년에 이르러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이라는 현재의 제명을 갖게 되었다. 1978년 올림픽헌장은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올림픽문헌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올림픽에 관한 근본적인 법원(法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¹⁰⁾ 올림픽헌장 제1조 제4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올림픽 운동에 소속된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올림픽헌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IOC의 결정에 구속된다.”라고 규정하여¹¹⁾ 올림픽헌장이 올림픽운동의 최고규범이며, 올림픽운동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IOC의 최고권위와 지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¹²⁾

올림픽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 6장 61개조의 법률(Rules), 다수의 부칙(Bye-laws)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올림픽 운동의 조직과 활동 및 운영의 기준을 규정하고 올림픽대회 개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올림픽헌장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조문에 앞서 올림픽헌장 소개(Introduction to the Olympic Charter), 前文(Preamble),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이 위치하고 있고, 제1장 올림픽운동(제1조~제14조), 제2장 국제올림픽위원회(제15조~제24조), 제3장 국제경기연맹(제25조~제26조), 제4장 국가올림픽위원회(제27조~제31조), 제5장 올림픽대회(제32조~제58조), 제6장 제재조치 및 벌칙, 징계절차 및 분쟁해결(제59조~제61조)로 구성되어 있다.

올림픽헌장의 목적은 ‘올림픽헌장 소개’에서 3가지 주요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¹³⁾ 첫째, 올림픽헌장은 헌법적 성격의 기초적 법률문서로서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과 본질적 가치를 제시하고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올림픽헌장의 소개’에서 올림픽헌장을 헌법적 법률문서(a basic instrument of a constitutional nature)라고 명시화하고 있는 것은 IOC를 비롯한 올림픽 관련 기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올림픽헌장이 최고규범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둘째, 올림픽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관(statutes for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는 올림픽헌장이 IOC라는 국제적인 법인격을 가진 조직의 근본규칙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IOC가 국제법상 주체가 되고 그 권한 내에서 회원국과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올림픽헌장은 국제법적 규범력을 가질

10) 김종호, “올림픽 헌장의 법적 기초와 구체적 규범성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제17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2, 75-76면.

11) IOC, *supra* note 6, at Rule 1, Sec.4, at p.15.

12) IOC, *supra* note 6, at Rule 1, Sec.1, at p.15.

13) IOC, *supra* note 6, Introduction to the Olympic Charter, at p.9.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IOC가 비록 주권을 가진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법인격을 가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올림픽헌장 제15조 제1항은 “IOC는 2000년 11월 1일 발효된 협약¹⁵⁾에 따라 스위스연방평의회가 승인한 사단법인으로 영속적인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으로 올림픽헌장에 의해 IOC는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그 법적 지위는 확인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비정부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 국제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IOC의 국제적 법인격성의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¹⁶⁾ 왜냐하면 IOC와 같은 비정부 비영리 국제기구는 개별국가들처럼 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 인정기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연합(UN)에서는 IOC를 UN체제 내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하나의 국제기구로서 간주하여, IOC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자체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HR)을 활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식적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¹⁷⁾ 이처럼 IOC가 UN 등 국제사회에 대한 현실적 영향력 행사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보편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적인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IOC의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IOC집행위원회는 올림픽헌장 제19조 제3항 제3.10호에서 “올림픽헌장과 올림픽대회조직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IOC의 모든 규정을 규정(cod-e), 규칙(rulings), 규범(norms), 지침(guidelines), 지표(guide), 편람(manuals), 지시(instructions), 요구사항(requirements)과 결정(decisions) 등의 적절한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¹⁹⁾ 이를 통해 개최국²⁰⁾ 및 회원국과 각국의 올림픽

14) 최경진, “IOC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효력-통합체육회와 올림픽 헌장 준수를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11, 133면.

15) 이 협약 제1조(Legal Capacity)는 “스위스연방의회는 스위스에서 IOC로 약칭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법적능력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IOC의 법인격을 인정하였다(Accord entre le Conseil fédéral suisse et le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relatif au statut du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en Suisse, 1st November 2000, R.O., 2001, pp.845 et s.).

16) 최경진, 앞의 논문, 134-136면.

17) Chad Nold, “Olympic-Sized Opportunity: Examining the IOC’s past neglect of human rights in host cities and the chance to encourage reform on a global scale”, 11 Loy. U. Chi. Int’l L. Rev. 161, 163. (Spring/Summer 2014)

18) 김종호, 앞의 논문, 85면.

19) IOC, *supra* note 6, at Rule 19, Sec.3(3.10), at p.46.

2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올림픽 유산’을 국가 발전에 원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위원회, 관련단체와 기관, 관련기업 그리고 올림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IOC의 사실상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록 올림픽헌장이 국제법규범으로서 조약 등과 같은 성문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제법적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²¹⁾ 국제관습 규범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²²⁾

셋째, 올림픽헌장은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올림픽 운동의 3개 주요 구성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s; IFs),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s: NOCs)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 모두는 올림픽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올림픽 운동의 구성원인 IOC, IFs, NOCs의 사명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총인원 11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OC위원으로 구성되는 IOC는 올림픽헌장에 따라 주어진 사명과 역할 및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IOC는 전 세계에 올림픽 이념을 증진하고 올림픽운동을 선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며,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³⁾ ② IOC가 승인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스포츠를 관할하고 국가별로 이를 스포츠를 관할하는 조직을 통합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로서 IFs는 올림픽운동 내에서 IFs의 지위와 의무 및 활동은 올림픽헌장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각 IF는 해당 스포츠를 관할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올림픽정신에 입각하여, 관할 종목의 경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은 올림픽헌장과 IOC의 결정과 부합하는 올림픽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 21) 1984년 6월 12월일 미국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Martin v.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사건에서 “올림픽대회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州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제협약으로서 올림픽헌장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해 올림픽 헌장의 국제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바 있다(*Martin v.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740 F2d 670, 705 (9th Cir. 1984). “We find persuasive the argument that a court should be wary of applying a state statute to alter the content of the Olympic Games. The Olympic Games are organized and conducted under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the Olympic Charter. We are extremely hesitant to undertake the application of one state’s statute to alter an event that is staged with competitors from the entire world under the terms of that agreement”).
- 22) 올림픽헌장이 국제관습규범의 지위를 가진다는 근거는 ① 유럽연합의회가 법안을 채택할 때에 올림픽헌장으로부터 나오는 고려사항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점, ② 터키의 자국 법질서 내에 올림픽헌장을 올림픽법으로서 채택한 점, ③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에서 스포츠 기본법으로서 올림픽헌장의 효력을 강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④ 각국이 올림픽 상징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법 내에 이식하는 점(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올림픽회장 사업)) 등이다(김종호, 앞의 논문, 87-88면).

23) IOC, *supra* note 6, at Rule 2, at p16.

기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경기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종목의 세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사명을 가진다.²⁴⁾ ③ NOCs는 올림픽헌장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활동과 교육에서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증진시키고, 자국 내의 올림픽운동의 발전, 증진,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들 정부기관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올림픽헌장에 어긋나는 어떠한 활동과도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올림픽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²⁵⁾

2. 올림픽헌장과 스포츠인권규범

국제스포츠계에서 보편적인 최고규범의 지위를 가지는 올림픽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Olympism)이념의 기본원칙 중 두 번째 원칙은 “올림픽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를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정과 연대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반한 상호이해를 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원칙은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은 스포츠라는 수단을 이용한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목표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⁶⁾ 하지만 스포츠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가지는 올림픽헌장은 국제인권규범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올림픽헌장에서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들, 제1조 올림픽운동, 제2조 IOC의 사명과 역할, 제27조 NOCs의 사명 및 역할 등의 규정에서 국제인권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헌장은 스포츠분야에 있어서 국제인권규범으로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올림픽헌장의 법적성격이 스포츠분야에 있어서 국제관습법규범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면, 스포츠분야에서의 인권과 관련된 올림픽헌장의 규범들은 스포츠인권 국제관습규범의 법적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4) IOC, *supra* note 6, at Rule 26, at pp.56.

25) IOC, *supra* note 6, at Rule 27, at pp.59-61.

26) IOC, *supra* note 6, at 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 2·4·6, at p.11.

스포츠인권 국제관습규범으로서의 올림픽헌장은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모든 인권적 사항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스포츠 선수의 인권과 관련하여 올림픽헌장은 인권규범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헌장에서 스포츠 선수의 인권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의 2·4·6, ② 제1조 제1항 “IOC의 최고 권위와 지휘 아래 올림픽 운동은 올림픽헌장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기관, 선수, 및 기타 인원을 포함한다. 올림픽 운동은 올림픽이념과 그 가치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및 제4항 “어떠한 방식으로든 올림픽 운동에 속한 모든 사람과 기구는 올림픽헌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IOC의 결정에 구속된다.”, ③ 제2조 제1항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윤리 발전 및 올바른 운영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스포츠에 있어 페어플레이 정신 확산과 폭력 금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 제4항 “공공 혹은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스포츠를 통해 인류에 봉사하고 이를 통해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 제7항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과 조직에서 스포츠에 있어 여성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8항 “금지약물 복용 퇴치를 주도하고 모든 형태의 경기 조작 및 관련 부패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깨끗한 선수와 스포츠의 본질을 보호한다.”, 제9항 “선수에 대한 의료 및 건강과 관련한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0항 “스포츠와 선수의 정치적 상업적 남용을 반대한다.”, 제11항 “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직업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조직과 공공 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13항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관심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스포츠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올림픽 대회가 개최 되도록 보장한다.”, ④ 제27조 제2항 제2.5호 “스포츠에 있어서 차별대우와 폭력행위에 저항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2.7호 “선수에 대한 의료 및 건강과 관련된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⑤ 제44조 제4항 “...NOCs는 국내경기연맹이 제안한 참가선수 명단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인종적, 종교적 혹은 정치적 이유 또는 기타 형태의 차별로 배제된 선수가 없도록 한다.”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올림픽대회와 인권침해

올림픽은 대규모 스포츠행사이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수도와 같이 규모가 큰 도시들이 개최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의 규모를 보면 미국과 같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의 수도가 개최하였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를 희망한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유치희망도시들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헌장 제33조 제1항은 “개최도시 선정은 IOC총회의 결정사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동조 제2항에서 “유치신청도시가 속한 국가의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올림픽헌장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임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IOC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희망도시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유치희망도시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사활을 걸고 올림픽대회의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올림픽개최도시는 올림픽개최 7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올림픽헌장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림픽은 지구상의 최고의 스포츠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규모의 참가자와 경기장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의 경우 전 세계 206개국에서 약10,903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또한 올림픽헌장 제32조 부칙에는 올림픽대회 기간은 16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올림픽대회개최도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약 1만 명 내외의 올림픽참가자들과 수많은 각국의 관계자 및 언론인, 그리고 수십만 명의 관광객 및 방문객들이 올림픽기간 내내 올림픽도시를 방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올림픽참가자와 관광객 및 방문객을 올림픽개최도시가 맞이하려면 다수의 경기장 신축 및 숙박시설의 확충, 개최도시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빈민가 또는 슬럼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대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와 대규모 재정지원 및 조달의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올림픽개최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희망하는 도시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올림픽개최유치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²⁷⁾

오랫동안 초대형 스포츠행사인 올림픽은 선정 및 유치, 입찰과 주관 및 진행 등 전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특히 2008년 중국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2016년 브라질 리우 하계올림픽의 경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주민들의 인권침해의 문제 등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게 했다. 이처럼 올림픽경기장 건설노동자

27) 2013년 3월 3일 스위스의 생 모리츠와 다보스의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은 그라우빈덴주 주민투표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안이 부결되면서 2022년 스위스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유치계획을 포기하였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올림픽경기장과 시설 및 스키리프트 등의 시설확충은 환경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운동을 펼쳐왔다(연합뉴스, “스위스 2022동계올림픽 유치 무산…주민투표서 부결, 연합뉴스(2013. 3. 4. 16:3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04/0200000000AKR20130304157200009.HTML?input=1179m>(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의 착취에서 시작하여 올림픽유치 비판세력과 도시빈민 등 약자집단의 탄압과 제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권문제가 올림픽과 함께 발생하고 있다. 물론 모든 올림픽개최 도시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의 경우 인간, 자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고, 독립적인 인권감시기구의 외부평가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모든 공사의 발주부터 공급 및 하청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임성개념을 적용하여 단 한 건의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런던올림픽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는데 있다. 이러한 올림픽으로 인해 파생되는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대표적 이다.²⁸⁾

국제사면위원회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⁹⁾ 첫째,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주최하는 국가는 스포츠행사의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IOC 및 FIFA와 같은 국제스포츠기구는 스포츠행사가 인권침해를 유발 또는 기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제스포츠기구가 인권정책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절차과정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³⁰⁾ 셋째,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주최와 개최과정에 관

28) 한겨레 칼럼, “조효제의 인권오디세이 올림픽, 스포츠, 인권”, 한겨레(2016. 7. 26 16:46,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3940.html>(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29)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SPORTS : Amnesty’s recommendations”, <http://www.sportandhumanrights.org/wordpress/index.php/2015/06/18/human-rights-and-sports-amnesty-recommendations>(검색일자: 2017년 5월 31일).

30) 국제사면위원회는 국제스포츠기구가 인권정책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절차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① 국제스포츠기구는 스포츠행사의 주최와 개최과정에서 개최국이 인권보호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입찰과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스포츠기구는 인권의 위협성을 조사하여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국제스포츠기구는 주요한 스포츠행사의 개최지를 선정할 때, 스포츠행사의 주최와 개최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위협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제되거나 노동착취와 같은 남용의 선례를 가지고 있는 개최국은 그러한 남용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국제스포츠기구는 개최후보국에게 개최신청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한 남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③ 주요 스포츠행사의 개최국이 선정되면 국제스포츠기구는 위협과 완화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최국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④ 국제스포츠기구는 스포츠행사의 과정에서 개최국이 권리를 침해한다면, 권리침해에 대해 취할 조치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⑤ 국제스포츠기구는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권감시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행사 조직위와 스포츠행사와 관련한 수주기업의 모든 계약서에는 반드시 수주기업이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과 수주기업이 UN의 인권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지침서(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르는 운용을 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개최국선정을 지지하는 문서에는 스포츠행사의 과정에서 개최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약속하는 보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만일 개최국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면, 유사한 제재가 개최국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제출한 다른 법적 책무의 위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⑦ 대규모 스포츠행사와 관련된 전체하도급계약업체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권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런된 모든 수주기업들은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모든 수주기업들은 그들의 전체 하도급계약업체 및 공급업체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올림픽헌장 제33조 제3항은 “유치신청도시가 속한 국가의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올림픽헌장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임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IOC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IOC도 올림픽개최도시 선정과정에서 유치희망도시와 관련 정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의 준수여부와 함께 국제사면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등과 같은 기준을 도입하여 올림픽 개최도시 결정과정에서 올림픽유치로 인한 환경파괴의 위험이나 인권의 침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심층적 조사 및 투명한 심사를 통해 올림픽과 관련한 환경파괴의 문제와 인권침해 문제가 더 이상 올림픽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끝으로 올림픽헌장 제32조 제2항은 “IOC는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영광과 책임을 올림픽대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IOC가 개최준비과정과 개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의 책임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개최도시에게 전가하고 IOC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근거로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III. 올림픽과 스포츠선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1. 올림픽헌장 제50조의 목적과 적용

IOC는 참가선수들로 하여금 정치적 논쟁들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그들의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포츠세계의 바깥에서 벌어지는 감정적이고·분열적인 논쟁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서 경기할 수 있는 스포츠경기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올림픽헌장은 제50조를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헌장 제50조의 주요한 4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를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 올림픽대회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상업적 광고가 없는 올림픽 경기장을 포함한 올림픽 장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이것은 “clean venue” policy이라고 한다), 셋째, 권한 없는 상업적·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포츠 유니폼과 장비에 제조자의 표시를 포함한 권한 있는 표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위한 규칙을 정의(定義)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 올림픽대회가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의 선동과 향의 또는 시위를

위한 무대의 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³¹⁾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올림픽헌장 제50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고 효력을 가진다. 첫째, 경기시간 동안 경기장에서 모든 선수들과 임원들 및 올림픽경기장 및 장소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승인받는 기타 인원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선수가 소속된 NOC의 추가 제한사항이 부과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오직 올림픽장소와 경기장 내에서 적용된다. 둘째, 올림픽헌장 제50조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공론화된 논쟁을 억제할 의도는 없지만, IOC는 올림픽선수촌과 올림픽 경기장 및 장소는 스포츠경기에 집중되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의 시위 또는 광고 및 홍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고 있다. 셋째, 친구, 가족 및 지지자들과 함께 선수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하거나, 소셜(social) 및 디지털 미디어에 참여하도록 권유받는 선수들과 기타 승인된 참가자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활동하는 것은 제50조를 적용하지 않지만, 참가자는 그들의 포스팅, 블로그 그리고 트윗이 올림픽정신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경기와 모든 세리머니를 하는 동안에 공식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만일 IOC 또는 NOC는 제50조의 잠재적 위반을 인식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다. 올림픽헌장에 의해 IOC 또는 회원국의 규정에 따라 NOC에 의해 잠재적 제재조치가 적용될 것이다.³²⁾

2. 올림픽헌장과 정치적 표현 및 선전금지규정

올림픽헌장은 제50조(광고, 시위, 선전) 제1항에서 올림픽경기장 등과 같은 올림픽 시설의 내부 또는 상공에 IOC집행위원회의 예외적인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광고나 홍보를 올림픽 시설의 내부 또는 상공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적인 설치물 및 광고 간판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³³⁾ 또한 ‘정치적 표현 및 선전’에 대하여 금지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는 “올림픽 장소, 현장 및 기타 구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⁴⁾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올림픽헌장의 제50조 제2항 규정은 1978년 1월1일 출간된 올림픽헌장 제57조(선전과 광고)에서 처음 규정하였다. 물론 이전 올림

31) IOC, “Rule 50 of the Olympic Charter: What you need to know as a Participant”, 2 June 2015, at p.1.

32) *Id.* at p.2.

33) IOC, *supra* note 6, at Rule 50, Sec.1, at p.91.

34) IOC, *supra* note 6, at Rule 50, Sec.2, at p.91.

픽 현장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62년 올림픽현장의 ‘VI. 올림픽대회를 유치하고자 희망하는 도시를 위한 정보’에서 “...초대장에는 올림픽대회기간 중에 올림픽 주경기장과 기타 경기장 및 올림픽선수촌 등에서 정치적 회합이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과 올림픽운동의 발전보다 다른 목적으로 대회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내용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규범적 내용이기 보다는 올림픽개최 희망도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³⁵⁾ 또한 1975년 올림픽현장 제55조(프로그램)의 ‘광고, 선전’에서 “올림픽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시위 또는 선전은 금지된다.”라고 조문으로 규정하여 현재의 올림픽현장 제50조 제2항의 내용과 유사하고 할 수 있다.³⁶⁾

그리고 올림픽 현장 제50조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50조 아래에 본조부칙을 두고 있는데,³⁷⁾ ‘정치적 표현과 선전의 금지’와 관련된 제50조의 부칙 제1항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이나 장비 제조업체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홍보나 선전, 광고도 선수나 참가자들의 신체 및 스포츠웨어와 용품 혹은 기타 용품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IOC집행위원회는 이 원칙의 적용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 제1조와 채택된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IOC집행위원회 혹은 총회는 해당 선수 및 선수단에게 실격 혹은 등록승인 취소의 결정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제50조 및 동조 부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해당 매뉴얼, 지침, 규정 혹은 가이드라인, 그리고 IOC 집행위원회의 기타 지시사항을 조직위원회와 선수, 팀 임원 및 관계자, 그리고 다른 모든 올림픽대회 참가자가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수를 비롯한 올림픽의 모든 참가자는 매뉴얼, 지침 규정 혹은 가이드라인, 그리고 IOC집행위원회의 지시사항으로 금지되어 있는 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어떠한 장소에서도 정치적 표현과 선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IOC집행위원회 또는 총회는 해당 선수나 참가자에게 제재조치 또는 징계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재조치 또는 징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올림픽현장 제6장(제재조치 및 벌칙, 징계절차 및 분쟁해결)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³⁸⁾, IOC의 해당기관

35) IOC, The Olympic Games, VI. Information for Cities which desire to stage the Olympic Games, 1 Jan 1962, at p.39.

36) IOC, Olympic Rules, at Rule 50(Programme), at Advertising, propaganda, 1 Jan 1975, at p.35.

37) IOC, *supra* note 6, at Rule 50, Bye-law 1-9, at pp.92-93.

38) IOC, *supra* note 6, at Rule 59, Sec.2, at p.101.

은 IOC집행위원회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IOC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로 한다)의 제재조치 또는 징계를 결정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한다. IOC집행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정치적 표현과 선전금지’를 위반한 선수와 팀에 대해서 올림픽대회에 ①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정지 ② 제명 ③ 등록자격 박탈 ④ 등록자격 철회 등의 제재조치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IOC집행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의해 제명과 등록자격 박탈의 제재조치 또는 징계를 받은 선수와 팀은 메달이나 상장을 IOC에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올림픽대회의 경기에서 획득한 순위에서 오는 혜택은 철회될 수 있다. 또한 IOC집행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정치적 표현과 선전금지’를 위반한 임원, 매니저 및 선수단의 기타 참가자 및 심판과 심판멤버에서 대해서 일시적 자격정지, 영구적 자격정지 추방의 제재조치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치적 표현과 선전금지’를 위반한 등록된 기타 모든 참가자에게도 등록철회의 제재조치 또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제재조치 또는 징계에 관한 절차적 내용으로 조사, 조사기간 중의 선수 등의 권리 등의 잠정적 정지, 당사자의 청문권 보장, 제재조치서 등의 서면통지, 제재조치 의 효력 등의 내용은 올림픽헌장 제59조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데,³⁹⁾ IOC집행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제재조치 또는 징계를 위한 조사의 권한을 가진 IOC집행위원회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IOC집행위원회는 조사 대상 인물 또는 조직에 대해 권리 또는 특권과 역할의 일부나 전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제재조치 또는 징계의 당사자는 협의사실을 알권리, 출석 또는 서면으로 변론할 권리를 포함한 청문권을 가지며, 총회, IOC집행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결정된 제재조치 또는 징계서를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관련 해당 기관의 다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재조치나 징계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IOC의 제재조치 또는 징계결정 등의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올림픽헌장 제60조에 의하면 올림픽대회에서 경기와 순위 및 기록 등의 경기결과 등에 대해 IOC가 내린 결정은 당해 올림픽대회의 폐회식 날로부터 3년 내에 IO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⁴⁰⁾ IOC의 결정의 적용이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오직 IOC집행위원회에 의해 해결할 수 있고 이때 IOC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⁴¹⁾ 다만, 올림픽대회 기간 중 또는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특별한 경우에 오직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⁴²⁾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올림픽헌장

39) IOC, *supra* note 6, at Rule 59, Bye-law 1-5, at p.102.

40) IOC, *supra* note 6, at Rule 60, at p.102.

41) IOC, *supra* note 6, at Rule 61, Sec.1, at p.102.

42)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스포츠 분쟁을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1981년 IOC

이 아닌 스포츠중재규정(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의 적용을 받게 된다.⁴³⁾

3. 올림픽에서의 금지된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의 사례와 평가

(1) 1968년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의 ‘흑인차별반대 시위사건’

‘흑인차별반대 시위사건(Black Power Saulte)’이란 1968년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 남자육상 200m경기 시상식에서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흑인선수 토미 스미스(Tommie Smith)와 동메달리스트인 존 카를로스(John Carlos)가 왼쪽가슴에 OPHR을 상징하는 하얀 스티커를 부착하고 흑인의 빈곤을 상징하기 위하여 검은 양말만을 신고서 시상식에서 머리를 숙이고, 토미 스미스는 오른손에 존 카를로스는 왼손에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하늘로 뻗는 행위를 통해 당시 미국사회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항의·반대하기 위해 행해진 흑인인권운동사의 중요한 사건이었다.⁴⁴⁾

이 사건은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부터 ‘인권을 위한 올림픽 프로젝트(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 OPHR)’에 의해 계획되었다. 1968년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에 흑인선수들의 참가거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시민권운동가였던 해리 에드워즈(Harry Edwards)와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를 포함한 다수의 흑인들이 1967년 11월에 OPHR을 설립되었으며, OPHR의 주요한 목적은 첫째, 미국에서 흑인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둘째, 국내외에서 정치적 선전도구로써 이용된 흑인 스포츠선수들의 착취를 폭로하기 위하여, 셋째, 흑인공동체의 이익과 요구에 대한 흑인 스포츠선수들 사이의 정치적 책임의 기준을 설립하고, 그러한 책임의 요구를 선수

위원장인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가 IOC위원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스포츠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구설립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88서울올림픽의 종목이 최종확정 되었던 로마 IOC총회에서 당시 IOC위원이며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판사로 재직 중이던 세네갈출신의 케바 음바에(Kéba Mbaye)를 중심으로 그 설립의 논의가 본격화되어 1984년 IOC의 하나의 기구로서 설립되었다. 1991년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중재가이드(Guide to Arbitration)을 출판하여 국제스포츠기구 및 단체들의 정관에 활용할 수 있는 중재 관련 모델 표준조항을 제시하였으며, 1994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IOC로 부터 독립하여 스포츠중재국제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ICAS)로 이관 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는 수많은 국제스포츠기구 및 협회들이 정관에 스포츠중재재판소를 최종 분쟁 해결기관으로 그 규모와 명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박은영·조은아, “스포츠 분쟁해결-CAS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제24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12, 74-75면).

43) IOC, *supra* note 6, at Rule 60, Sec.2, at p.102.

44) 정용철·정윤수·박정준, 『스포츠인권을 만나다』, 나눔, 2016, 342면.

들이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허용되는 방식에 대해 조언하기 위하여, 넷째, 흑인 공동체가 그들의 스포츠참여의 중요성과 단단히 숨겨져 있는 그들의 역동성을 인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⁴⁵⁾ 이러한 목적에 따라 OPHR은 미국 및 세계 스포츠대회에서 시위 및 거부운동(boycott)을 통해 인종차별에 반대했다. 또한 OPHR은 당시 IOC위원장이며 인종차별주의자로 알려진 에브리 브런디지(Avery Brundage)의 하야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에브리 브런디지 IOC위원장은 OPHR의 주장에 대해 OPHR은 ‘선동자를 찾는 무책임한 주장(irresponsible publicity seeking agitators)’을 하는 단체로 무시하고 거절하면서 “올림픽 운동이 어떠한 숨겨진 이유를 위한 도구나 무기로 이용되는 것과 올림픽 경기가 어떤 종류의 시위를 위한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그의 연설 중 일부에서 주장하였다.⁴⁶⁾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흑인차별반대 시위사건 사건이 발생한 후 당시 IOC위원장이었던 Avery Brundage는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에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미국 육상팀 전부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IOC로부터 선수등록자격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IOC에 반환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를 맹비난하였고, 또한 미국언론에 의해 애국심이 없다는 비방받기 전에 그들 둘은 IOC에 의해 올림픽선수촌에서 추방되었으며, 귀국길에서는 살해위협까지 당했으며,⁴⁷⁾ 미국 육상계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했다. 한편 이들 두 흑인 선수의 저항에 동조해 왼쪽 가슴에 하얀 스티커를 붙이고 함께 시상식에 올랐던 은메달리스트인 호주의 피터 조지 노먼(Peter George Norman)도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백인우월주의가 팽배하던 호주의 언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기도 했다.⁴⁸⁾ 2006년 10월 6일에 노먼이 사망하자 장례식에 참석한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노먼의 관을 운구하여 올림픽에서 함께 인종차별에 저항해준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같이 했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인권에 있어서 연대의 본질 및 중요성의 교훈을 심어주고 있다.⁴⁹⁾

이처럼 흑인차별반대 시위사건은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에 인종차별정책을 중단하고

45) Harry Edwards, “The 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 An Assessment Ten Years Later”, *The Black Scholar*, Vol. 10, No. 6/7 HUMAN RIGHTS U.S.A. 2, Taylor & Francis, Ltd., p.2. (March/April 1979)

46) Gareth Edwards, “Faster, higher, stronger: a critical analysis of the Olympics”, *Irish Marxist Review*, Vol. 1 No.2 73, p.79. (2012)

47) *Id.*

48) 정용철·정윤수·박정준, 앞의 책, 342-343면.

49) 위의 책, 343면.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게다가 올림픽에서 정치적 표현과 선전금지라는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권의 역사에서 올림픽의 가장 위대하고 용기 있는 장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 1972년 뮌헨 하계올림픽의 ‘정치적인 적대적 발언사건’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 남자사격 50m 소구경복사에 출전한 북한의 리호준 선수는 600점 만점에 599점이라는 경이적인 세계신기록을 달성하며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 이후 우리민족으로서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그는 수상소감 인터뷰에서 “김일성 수령 동지의 교시에 따라 원수의 심장을 겨누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라고 하여 구설수에 올랐으며, 당시 IOC에서 리호준 선수의 발언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메달 박탈이라는 제재조치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 사격협회가 곧바로 IOC와 국제사격연맹에 사과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⁵⁰⁾ 이 사건의 경우 ‘흑인차별반대 시위사건’과는 달리 IOC는 당시 냉전시대의 국제사회에서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북한 사격연맹의 사과를 받아 들였으며, 북한선수단에게 경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3)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의 ‘독도는 우리땅 세리머니사건’

2012년 8월 11일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은 대한민국 대 일본의 올림픽동메달이 걸린 숙명의 결전이였다. 경기시작 전부터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 대 일본의 3·4위 경기는 브라질 대 멕시코의 결승전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빅매치로 선정되는 등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물론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였다.⁵¹⁾ 역사적으로 스포츠 한·일전은 과거 식민통치의 아픈 역사적 상처와 독도영유권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단순히 스포츠경기의 의미를 넘어 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선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능력 등을 동원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사활을 걸고 겨루는 결전의 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50) 위키백과, “리호준”, Wikimedia Foundation, Inc., <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D%98%B8%EC%A4%80>(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51) 한국경제 문화스포츠, “[올림픽] 올림픽축구 결승전보다 한일전이 더 궁금해, 美'외신'”, 환경닷컴 (2012. 8. 10. 10:26), <http://news.hankyung.com/culturesports/2012/08/10/201208100055g?nv=o>(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따라서 런던올림픽 한·일전은 이러한 결전의 각오에 함께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더욱 더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었다. 이러한 예상과 같이 양팀은 90분 내내 사투(死鬪)를 벌이는 경기를 하였다. 경기결과는 한국이 일본을 2-0으로 제압하여 한국축구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동메달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림픽축구 한·일전에서 승리한 한국대표팀 선수와 코치진 및 관계자들이 경기장에서 관중들과 함께 승리의 환희를 만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 한국대표팀 수비수로 맹활약한 박종우 선수는 관중석의 한국인 응원객이 전해준 한글로 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경기장을 돌면서 세리머니를 펼치다가 대한축구협회의 관계자의 제지로 세리머니를 바로 중단하였다. 그러나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를 문제 삼은 IOC는 박종우 선수의 행위가 올림픽현장을 위배한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라며, 이와 관련하여 IOC와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공식서한과 함께 메달시상식에 박종우 선수의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권유를 한국선수단에게 전달했다. 이에 한국선수단은 즉각 대책회의를 통해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에 대해 우발적 행위로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IOC에 전달하였으나, 당시 자크 로게(Jacque Rogge) IOC위원장은 박종우 선수의 행위를 정치적 표현(Political statement)이라고 지적하면서 IOC는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⁵²⁾ 이후 IOC는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국제축구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에게 자체 조사를 의뢰하고,⁵³⁾ 당시 IOC는 올림픽 현장에서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IOC 집행위원회가 조사 기간 중 조사대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제59조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박종우 선수의 올림픽 동메달 수여를 잠정보류하기로 최종결정하게 되었다.

런던 하계올림픽의 폐막일에 FIFA는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대한축구협회(KFA)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박종우의 세리머니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주장 등을 입증할 각종 자료들과 함께 보고서를 2012년 8월 16일 FIFA본부에 직접 제출하였다. 2012년 10월 5일 개최된 FIFA상벌위원회는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

52) 최중준 칼럼, “[최중준 칼럼] 스포츠분쟁과 사건사고 연구(3)”, 네이버스포츠뉴스(2016. 7. 8.),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94&aid=000000028>(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53) NEWSIS 스포츠, “[종합] IOC, 징계위원회 구성 ‘박종우 건 심의’”, 뉴시스(2012. 12. 6. 08:4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21206_0011664827(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요하다고 판단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박종우 선수의 징계와 관련하여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다가, 드디어 2012년 11월 20일에 FIFA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FIFA징계규정집 제57조⁵⁴⁾와 2012 런던올림픽축구 토너먼트규약 제18조 제4항⁵⁵⁾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면서 박종우 선수에게는 A매치 2경기 출전정지 및 3,500 스위스 프랑(약 410만원)의 벌금부과하고 대한축구협회에게는 경고조치라는 징계를 확정하였다. FIFA는 2012년 12월 3일 대한축구협회에 FIFA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면서, 박종우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머니’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에 향후 이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경우 더 엄격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⁵⁶⁾

FIFA의 결정을 통보받은 IOC는 2012년 12월 6일에 당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2월 11일에 박종우 선수와 대한체육회(KOC)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청문회 참가단은 IOC징계위원회의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여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 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전에 의도된 정치적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IOC징계위원의 질의와 반박 속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해명하였다. 이러한 박종우 선수와 우리측 청문회 참가단의 진심어린 해명과 노력의 결과로 IOC징계위원회는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가 올림픽 메달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다음날 소집된 IOC집행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박종우 선수에게 동메달 수여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IOC대변인은 “IOC는 박종우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머니’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기 직

54) FIFA, FIFA Disciplinary Code(2017 edition), at Code 57, May 2017, at p.31. “Anyone who insults someone in any way, especially by using offensive gestures or language, or who violates the principles of fair play or whose behaviour is unsporting in any other way may be subject to sanctions in accordance with art. 10 ff.”

55) FIFA, Regulations of the Olympic Football Tournaments London 2012, at Rule 18, Sec.4, 15 October 2010, at p.27. “Players and officials shall not display political, religious, commercial or personal messages or slogans in any language or form on their playing or team kits, equipment (including kit bags, beverage containers, medical bags, etc.) or body for the duration of their time in the stadiums, training grounds or other areas where accreditation is required to gain access.”

56) NEWSIS 스포츠,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징계, 외신 잇달아 보도”, 뉴시스(2012. 12. 3. 21:1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21203_0011657006(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57) IOC가 공식문서로 대한체육회에 통보한 최종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박종우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경고 조치, ② 대한체육회(KOC)에 대해서는 선수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미흡에 대해서 경고 조치, ③ 대한체육회는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올림픽현장에 대한 자체교육 계획을 제출해서 IOC의 평가와 승인을 득할 것, ④ 박종우 선수의 동메달은 대한체육회가 박종우 선수에게 직접 수여하되, 어떤 축하행사나 미디어 행사를 진행하지 말 것(최종준 칼럼, 앞의 기사(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후 박종우 선수가 일본 선수에게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는 장면은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것이며 이를 증명한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⁵⁸⁾

박종우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머니사건’의 원만한 해결은 어떤 긴급한 정치현안에 대한 결연한 저항이 아닌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지는 일본과의 경쟁심에서 발휘된 애국주의가 순간적으로 잠시 발흥된 것이다⁵⁹⁾라는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올림픽현장 및 유사한 사례들을 면밀한 검토하여, IOC징계위원회의 청문을 준비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올림픽의 정치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용으로 일관하고 있던 IOC의 강경한 기류를 막았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대한 관심을 보인 일본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한·일간의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문제로 부각시키고자하는 의도를 품고 있었지만, IOC의 박종우 선수에게 동메달을 수여하기로 한 최종 결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도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IOC의 결정이 자칫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⁰⁾

하지만 국내에서도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는 정치적인 표현에 해당된다는 지적과 함께 올림픽을 통해 세계평화를 이루고자하는 IOC가 정작 세계 평화의 기초와 버팀목이 되는 인권의 신장에는 너무나 소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OC가 북경올림픽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회피한 점과 일본선수들의 육일승천기를 연상시키는 유니폼 착용에 대해 외면한 IOC는 이윤배반적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에 대해 IOC가 올림픽 현장 제50조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¹⁾

따라서 이와 관련한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

58) OSEN, “IOC를 설득시킨 박종우의 진심과 박용성 회장의 숨은 노력”, OSEN(2013. 2. 14. 07:24), <http://osen.mt.co.kr/article/G1109541951>(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59) 정용철·정윤수·박정준, 앞의 책, 142면.

60) 최근에 일본 정부는 2018평창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문제 삼아 외교 경로를 통해서까지 항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평창올림픽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대회장과 그 구역에는 정치적 선전 활동을 금지한다는 올림픽 현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산케이신문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을 때, 대표팀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팻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점까지 언급하였다 (한겨레 국제, “일본, 평창올림픽 누리집‘독도’표기도 시비”, 한겨레(2017. 1. 20. 10:2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79568.html#csidx037b975f8a50e64a14e24a57d54a9b5>(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61) 김중호, 앞의 논문, 93-94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정부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도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평창 동계올림픽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성공적 개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4)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검은 완장착용 불허사건’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기간 중 우크라이나수도 키예프에서 반정부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로 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선수단의 슬픔의 표시이며 동정의 표현으로 검은 완장착용을 요청을 IOC가 정치적 표현에 해당된다며 불허한 ‘검은 완장(black armband)착용 불허사건’은 IOC가 얼마나 올림픽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해석을 통해 인권문제에 관해 외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기간 중에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는 키예프에서 반정부시위도중 야누코비치 정권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희생된 사상자들을 애도하고 ‘올림픽 정진’ 정신에 따라 대립을 멈추자는 의미로 대회기간 동안 검은 완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IOC에 요청하였지만, IOC는 올림픽동안 경기장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도 금지하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은 완장착용의 허용은 올림픽현장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IOC가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올림픽선수단의 검은 완장착용을 불허한다고 결정하였다.⁶²⁾ 이에 앞서 IOC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정치적 표현과는 거리가 먼 사안으로 판단되는 소치 동계올림픽개최 2년 전에 훈련도중 사고로 사망한 캐나다출신의 세계적인 프리스타일 스키선수인 Sarah Burke을 추모하기 위해 올림픽에 참가한 프리스타일 스키선수가 추모스티커를 헬멧에 부착한 사건과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 4명이 팀동료의 남동생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왼팔에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에 출전한 것도 정치적 표현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를 질책하였다.⁶³⁾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IOC는 다른 선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 추모를 경기 중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IOC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⁶⁴⁾ 하지만

62) Mirror Sport, “Olympic bosses DECLINE Ukraine’s request to wear black armbands at Sochi Olympics”, MGN(1402, 19 FEB 2014), <http://www.mirror.co.uk/sport/other-sports/athletics/sochi-olympics-ioc-turns-down-3161408>(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63) Frédérique Faut, *id.* at p.253.

소치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4×6km 계주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우크라이나 올레나 피드루시나(Olena Pidhrushna) 선수가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IOC는 경기장 내에서는 정치적 표현은 금지되어 있지만, 기자회견장에서 정치적 표현은 허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소치 올림픽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시상대(Podium)가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올림픽 Agenda 2020’의 승인에 따라, 올림픽운동의 미래를 위한 IOC의 전략적 로드맵에는 올림픽기간 동안 올림픽선수촌에 선수들이 다함께 모여 고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현화하고 애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그리고 폐막식에는 올림픽경기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의 순간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⁶⁵⁾ 이러한 IOC의 개선된 조치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장소적 제한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조치의 성격을 가질 뿐이며, 이러한 추모를 위한 행위 또는 표식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물론 상업적 의도를 지닌 추모의 방식은 제50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수들의 유니폼 또는 장비 일부에 검은 완장 또는 추모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은 IOC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2013년 6월 러시아에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반동성애법’이 발효되고 난 후, IOC는 올림픽현장은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성적소수자의 차별금지를 위한 러시아 정부차원의 보장을 문서로 요구하기도 하는 등,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문제로 소치 동계올림픽은 개최되기 전부터 몇몇 국가들이 올림픽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며,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의 ‘반동성애법’에 비판이 많이 분출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⁶⁶⁾ 2013년 12월 11일소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중에 특별구역에서만 시위를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64) JTBC뉴스, “‘표현의 자유’ 놓고 대립하는 소치 현장…IOC-선수 팽팽”, JTBC(2014. 2. 13. 22:3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29766(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65) IOC, *id.* 2 June 2015, at. p.3.

66) 2014년 2월 6일 네덜란드의 스노보드 선수인 셰릴 마스는 동성애자로 여자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예선에서 경기를 마친 뒤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색 장갑을 카메라에 들어 밀어 러시아의 반동성애법에 반대하는 뜻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마스는 무지개색 장갑을 비춘 의도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장면을 방송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4 소치동계올림픽, “<올림픽> 동성애자 선수, 카메라에 무지개색 장갑 클로즈업”, 연합뉴스(2014/02/08 08:37), <http://www.yonhapnews.co.kr/sochi/2014/02/08/3101000000AKR20140208021700007.HTM>L(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한 공식적인 시위장소를 설정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시위대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밝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참가선수들에게 올림픽헌장에 따라 경기장 등에서 정치적·상업적 메시지를 드러내면 안된다는 의무조항을 주지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위특별구역은 지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도 지정됐지만 해당 지역이 올림픽 경기장 등에서 멀리 떨어져 이를 이용한 시위대가 없었다는 점에서 IOC의 의도는 참가 선수들의 의사표현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유명 테니스 스타인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Martina Navratilova)는 같은 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UN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인권문제개선의 노력이 부족한 IOC를 비난하기도 했다.⁶⁷⁾

4. IOC의 정치적 표현 및 선전금지규정의 해석 및 결정의 문제점

지난 수십 년간 IOC는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림픽참가 선수의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을 근거로 올림픽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행위부터 슬픔과 동정의 감정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순수한 감정적 표현까지도 정치적 표현으로 간주하여 금지하였다. 여기에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IOC는 제명 또는 선수등록자격박탈이라는 강력한 칼날로 선수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이처럼 IOC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스펙트럼적 해석을 통해 위반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것이다. 게다가 IOC는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의 정치적 표현 및 선전의 범위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무엇이 올림픽헌장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표현 및 선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게 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올림픽을 통한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이라는 올림픽이념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하는 올림픽운동의 발전과 보호육성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IOC가 만일 올림픽에서 선수들과 경기단체들에 의한 정치적 표현과 선전을 묵인하게 된다면, 올림픽이 자칫 국제사회 및 각국의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OC의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과 이로 인해 올림픽운동의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67) 문화일보 스포츠, “러, 소치 동계올림픽 중 시위 지역 제한 특별구역 지정…올림픽위원회 ‘IOC 헌장 위배’ 비판 목소리”, 문화일보(2013. 12. 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21101072333274006>(검색일자: 2017년 5월 29일).

밖에 없다.

하지만 올림픽정신의 훼손과 올림픽운동의 장애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올림픽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IOC가 올림픽정신의 훼손과 올림픽운동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한 심각한 올림픽정신의 훼손과 올림픽운동의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할 만한 설박하고도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진정한 올림픽정신은 인권의 목소리를 정치적 표현으로 치부해 이를 회피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눈을 똑바로 뜬 채로 그 인권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용기이며, 만일 IOC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인권의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외면하게 되면 스스로 올림픽정신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V. 결어 -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IOC는 먼저 올림픽에서 참가선수들이 국제인권규범으로 정립된 보편적 인권의 주장에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 드려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종차별 반대행위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보편적 인권의 주장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인권의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올림픽의 정신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올림픽의 정신과 목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IOC는 올림픽현장이 국제스포츠인권규범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보장되는 인권규범들을 보다 많이 올림픽현장에서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올림픽현장이 스포츠라는 전문분야의 국제인권규범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스포츠활동 그 자체로 인권이기 때문에 IOC는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인권적 침해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역시 올림픽현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IOC에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언을 하자면, 제50조 제2항의 규정과 제59조 제2항의 제재조치 또는 징계규정을 고인에 대한 추모를 위해 검은 완장의 착용을 선수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FIFA의 규정과 같이 덜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정치적 표현 및 선전사건'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⁶⁸⁾ 왜냐하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IOC가 올림픽에서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 경우 엄격하게 제59조 제2항의 제

68) Frédérique Faut, *id.* at p.262.

제조치 또는 징계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스포츠선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이를 자제하는 결과인 소위 위축효과(chilling effect)⁶⁹⁾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50조 제2항의 규정과 제59조 제2항을 덜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스포츠선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으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넷째, IOC는 올림픽기간 동안 선수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올림픽선수촌 등과 같은 올림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 특정장소의 일부 공간에만 이를 허용하지 말고, 관중들과 시청자의 관심을 많이 받는 올림픽경기장과 같은 장소에 까지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올림픽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올림픽 참가선수의 가장 큰 목표이겠지만,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남자200m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피터 조지 노먼 및 2016 리우올림픽 남자마라톤의 페이사 릴레사의 경우처럼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올림픽참가선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IOC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IOC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분단이라는 민족적 아픔과 한반도의 긴박한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올림픽에서 민감한 정치적 논쟁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여전히 올림픽의 순수함만을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평창 올림픽이야말로 IOC가 올림픽현장의 올림픽이념과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원한다. 물론 상상도 할 수없는 일이지만, IOC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이라는 올림픽운동의 목표를 100% 달성한 올림픽으로 인권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지 모른다.

69) 헌법재판소 2008. 1. 7. 2007헌마70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사건.

참 고 문 헌

- 안경환,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11.
- 정용철·정윤수·박정준, 『스포츠인권을 만나다』, 나눔, 2016.
- 김종호, “올림픽 현장의 법적 기초와 구체적 규범성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제17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2.
- 박은영·조은아, “스포츠 분쟁해결-CAS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제24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12.
- 최경진, “IOC 올림픽 현장의 국내법적 효력-통합체육회와 올림픽 현장 준수를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11.
- 최혜진·예상한,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와 최근 동향”, Africa Center Report 제14호,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Korea-Africa Center), 2016.10.18.
- Chad Nold, “Olympic-Sized Opportunity: Examining the IOC’s past neglect of human rights in host cities and the chance to encourage reform on a global scale”, 11 Loy. U. Chi. Int’l L. Rev. 161. (Spring/Summer 2014)
- Frédérique Faut,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statements by athletes and its consistency with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International Sports Law Journal, Volume 14 Issue3 253, p.253. (November 2014)
- Gareth Edwards, “Faster, higher, stronger: a critical analysis of the Olympics”, Irish Marxist Review, Vol. 1 No.2 73. (2012)
- Harry Edwards, “The 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 An Assessment Ten Years Later”, The Black Scholar, Vol. 10, No. 6/7 HUMAN RIGHTS U.S.A. 2, Taylor & Francis, Ltd.. (March/April 1979)
- FIFA, FIFA Disciplinary Code(2017 edition), May 2017.
- FIFA, Regulations of the Olympic Football Tournaments London 2012, 15 October 2010.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LYMPIC CHARTER, DidWeDo S.à.r.l., 2 August 2016.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Rule 50 of the Olympic Charter: What you need to know as a Participant”, 2 June 2015.

